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7,192,944	13,115,788
일반회계	392,727,010	11,781,810
특별회계	44,465,934	1,333,978
공기업특별회계	28,267,370	848,02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532,398	585,9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34,972	262,049
기타특별회계	16,198,564	485,957
주택사업특별회계	358,682	10,76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98	3,078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43,600	10,3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15,097	51,453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28,368	27,85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70,763	17,1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19,936	15,59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6,170,457	185,11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30,000	72,9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45,752	70,37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13,311	21,399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62,69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